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11월 8일

나. 발의자: 우경란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경란 의원)

가.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민원실의 설치(안 제4조)

라.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마. 민원실 연장 운영(안 제6조)

바.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區)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에서는 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에서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로,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임을 규정함. 아울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서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개정되면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었고,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민원실의 휴무, 운영시간,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보고 있어, 추후 토요일 또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근무시간 등)을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안 제정 후 세부지침 등을 통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토요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를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4
----------	-----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 우경란·양송이·김지연
최인순·이순우·전승관
차인영·이규선·이성수
임헌호 의원(10인)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 민원실의 설치(안 제4조)
- 라.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 마. 민원실 연장 운영(안 제6조)
- 바.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